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준대규모점포 관련
규제존속기한 연장〉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160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윤준병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3. 20.
3. 회 부 일 : 2025. 3.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이 최초로 도입된 후 지속 연장되어 왔으나, 2025년 11월 23일자로 유효기간이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2023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폐업률은 9.5%로 전년 대비 0.8%p 상승하고, 전체 사업자 중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100만명에 육박해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하는 등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작년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중소기업이 직격탄을 맞게 되어 그 보호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였음.

이에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계속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현재 2025년 11월 23일까지로 규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준대규모점포 등과 관련된 규제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현행	개정안
제48조의2(규제의 존속기한) 제2조제4호, 제8조제1항·제2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8조제3항·제4항 및 제13조의3은 2025년 11월 23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48조의2(규제의 존속기한) ----- ----- ----- -----2030년----- -----.

현행법 제48조의2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몰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됨. 첫째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한 사항으로 해당 구역 내에서 대규모점포등이 개설등록을 할 경우 이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고, 둘째는 준대규모점포(SSM)에 관한 규제임.

1) 제48조의2(규제의 존속기한) 제2조제4호, 제8조제1항·제2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8조제3항·제4항 및 제13조의3은 2025년 11월 23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48조의2에 따른 규제의 존속기한 적용 대상 조문별 내용 요약> ① 제2조제4호 : <u>준대규모점포의 정의</u> ② 제8조제1항·제2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변경하려는 자는 <u>상권영향평가서</u> 및 <u>지역협력 계획서</u>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u>등록</u>하여야 하고, 미진하다고 판단 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③ 제8조제3항·제4항 :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의 대규모점포등의 <u>개설·변경 시</u>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고, <u>등록 제한 및 조건</u>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u>조례</u>로 정함. ④ 제13조의3 : <u>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u>

이러한 규제는 대형마트 및 SSM 확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현행법에서 규제 존속기한 규정을 둔 취지는 일정기간마다 규제의 실효성 및 지속 필요성 등을 재검토하기 위한 것임.

동 제도는 최초 2010년에 한-미, 한-EU FTA 체결 시 통상마찰 가능성²⁾ 등을 감안하여 일몰제의 형태로 입법되어 그 시효를 몇 차례 연장³⁾ 하며 현재에 이르렀으며,

현행법 제48조의2에 따라서 준대규모점포에 관한 규제 등의 효력이 만료될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가 폐지되므로, 개정안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효를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

<일몰제 적용 조항 효력상실시 변동사항>

구 분		등록규제				영업규제
		모든 구역		전통상업보존구역		모든 구역
		개설계획 예고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등록제한 조건부가	영업제한 (영업시간 의무휴업일)
대규모 점포	대형마트	O	O	O	O → X	O
	기타	O	O	O	O → X	X
준대규모점포		O → X	X	O → X	O → X	O → X

2) 한-미, 한-EU FTA 등 체결시 유통업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2010년 국회 논의 당시 통상 문제 발생가능성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일몰을 도입하고, 규제의 최초 존속기한은 3년(2010. 11. 24. 시행)으로 하였음

3) 가장 최근의 개정은 2020년 10월 5년 연장임.

이와 관련하여, 장기적인 경기부진과 임차료·인건비·대출금리 등 각종 비용부담 증가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난 악화가 높은 폐업률로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⁴⁾을 고려할 때 현행 규제의 존속기간을 일정기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유통환경의 변화로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거래가 급증하여 오프라인 유통산업이 침체되고 있는 현실에서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가 전통시장 등의 보존에 효과적인 정책인지에 대한 규제 실효성 분석을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함께 제시되고 있음.

<개정안에 대한 관련 협회 의견>

협회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한국체인 스토어협회 (25.7.10)	□ 준대규모점포 규제 완화 찬성 ○ 규제로 인해 중소유통이 아닌 온라인 및 식자재마트가 수혜를 받음 * 규제 이후 2012년 대비 2024년 매출 증감율 : 온라인(252.8%), 편의점(192.7%) VS 대형마트(8.8%), 전통시장(△7.8%) 역성장 ○ 준대규모점포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중소자영업자) 확대 등을 통해 소상공인 육성에 기여 □ 전통상업보존구역 규제 일몰 3년 연장 찬성
한국수퍼마켓 협동조합연합회 (25.6.30)	□ 준대규모점포 규제 완화 반대 ○ 준대규모점포는 대규모점포에 준하는 영향력을 가지며, 오히려 골목상권에 대한 영향력이 크므로 규제 완화 시 중소상권 침해가 가속 우려 ○ 현재 유통 구조에서 준대규모점포는 대규모점포와 유사한 수준의 자본력, 입지력, 영업방식을 보유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워 사실상 우회 출점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 전통상업보존구역 일몰을 최소 5년 이상 연장 필요

4) “폐업 자영업자 98.6만명 역대 최대…2030 사장님 29만명 망했다” <서울경제, 2024. 12. 26.>

	○ 최소 5년 이상 유예기간을 보장해야 제도 효과 검증과 보완이 가능
한국마트협회 (‘25.6.27)	□ 준대규모점포 등 규제 완화 반대 ○ 근로자 건강권 및 골목상권 보호취지를 고려할 때 준대규모점포 규제만 선택적으로 완화하는 것은 당초 규제도입 취지에 맞지 않음 □ 전통상업보전구역 일몰 연장 찬성 ○ 전통상업보전구역은 유통대기업의 골목상권에 무부분별한 입점을 막기위한 조치로 합리적인 일몰기간 연장이 필요
전국상인연합회 (‘25.7.2)	□ 준대규모점포 등 규제 완화 반대 ○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는 전통시장, 소규모 상점 등 매출에 피해를 주고 있는 점포로 규제 강화 필요 □ 전통상업보전구역 규제 강화 필요 ○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규제 또한 입점할 수 없다는 강행규정 변경 필요
소상공인연합회 (‘25.7.4)	□ 준대규모점포 규제 완화 반대 ○ 동 규정은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에 취지가 있으며 준대규모점포는 사실상 대규모점포와 유사한 수준의 자본력 보유하고 있어 규제완화 반대 □ 전통상업보전구역 일몰 5년 연장 필요 ○ 규제 유효성 평가는 제정목적 달성여부와 시기 등 중장기적 평가가 필요하므로 일몰규정은 최소 5년 연장 필요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개정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대·중소유통 균형발전 및 전통시장·소상공인 보호시책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고, 규제 여부는 지자체 자율적 선택이 가능한 점⁵⁾을

고려할 때 규제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또한, 관련 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 폐지시 무분별한 출점으로 인해 전통시장과 인근 점포 등 소상공인 매출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따라서, 개정안의 심사 시 관계 부처 및 업계의 찬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연장 여부 및 기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2025년 9월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는 준대규모점포 규제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관련 일몰 규정의 연장 여부에 대한 유사 개정안이 계류⁶⁾되어 있으므로, 일몰 연장 필요성 등을 검토함에 있어 관련 법률안 간의 연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5)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 ③ (생 략)

④ 제3항에 따른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 의안번호 제2211037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3인, 의안번호 제2212489호)」

문 의 처
02)6788-5458